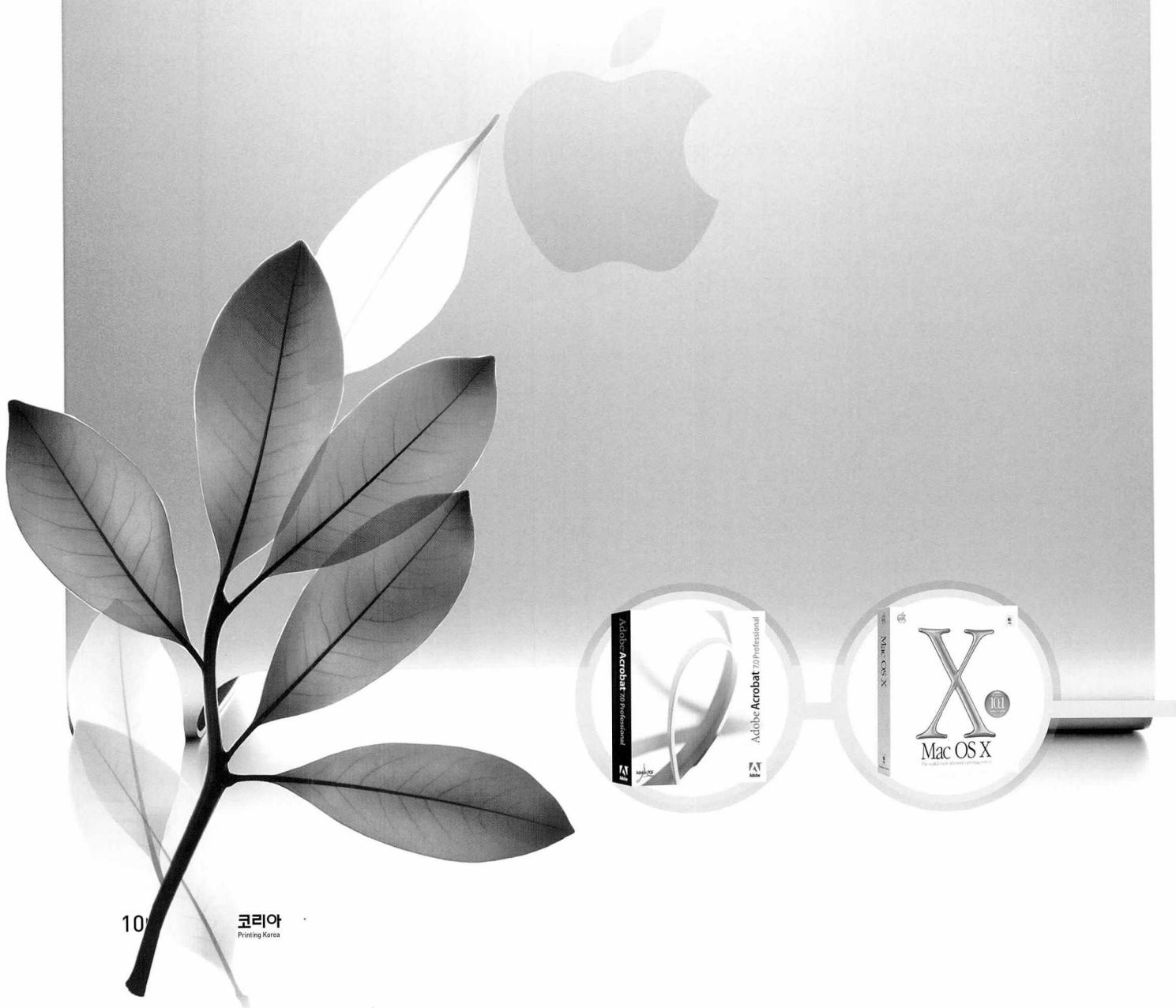


업계의 숨은 지뢰, 불법 소프트웨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불법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단속으로 업계에 비상이 걸리곤 한다. 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부업체를 겨냥한 것이지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업체관계자들이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올바른 소프트웨어 관리 방법,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매년 연말이면 “어느 업체가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돼 몇천만원을 물어 줬다더라”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돈다. 이런 소문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자들까지 긴장하게 만든다. 혹시 자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품을 구입했지만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은 알수없는 소문과 더해져 점점 더 업계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과연 소프트웨어 사용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적재산권의 하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제작자의 창조적인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저작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많이 줄어

초창기에 소프트웨어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국내 정품사용률은 10% 내외였다. 지금은 크게 나아져, 50% 정도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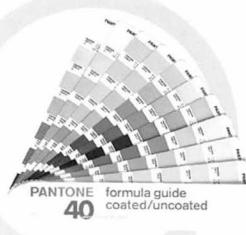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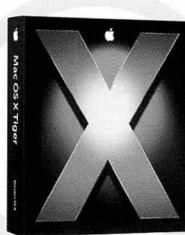
면 2004년도 한해만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은 2838건에 달하고 피해액만으로도 38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사용자 절반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계산이다. 이런 상황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2005년 1311건 피해액 30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06년 1591건 피해액 301억 원으로 차츰 감소세에 있다.

소프트웨어 가격은 옛날 그대로?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정품 사용률이 50%대로 높아졌음에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과거 10%미만의 정품사용률을 보일 때는 피해액의 일부를 정품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품 사용률이 50%를 넘은 지금 가격이 옛날 그대로인 것은 왜일까. 물론 소프트웨어제작업체는 그동안의 제작비와 투자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관련 업체의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소프트웨어 사용의 특성상 대체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해도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독점에 대한 저항을 피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구입비만 2000만원이 훌쩍 넘어

지식콘텐츠를 생산하는 인쇄출판업계도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출판사들은 비싼 소프트웨어 가격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품을 써야 하는데, 전부 구입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따르죠.’ 한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인쇄출판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편집소프트웨어는 QuarkXpress 와 InDesign,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다. 이를 가격을 보면, QuarkXpress는 260만원, InDesign은 어도비 크리에이티브CS2 패키지로 130만 원선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PC마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출판사에 PC가 3대가 있고 QuarkXpress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78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든다. 이는 물론, 소프트웨어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의 가격이다. 이밖에 추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나면, 족히 2000만원이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이 나온다. 영세한 중소업체들에게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

라이선스 계약 등 활용할 필요 있어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제작업체에서 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이다.

라이선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사용허락’으로 규정되는 것을 말한다. 패키지 판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사용허락’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대의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패키지로 구입하게 되면, 10개의 제품이 배송되고, 각각에 증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에 비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필요한 제품 한 개와 10개의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대부분 라이선스 구매가 패키지(박스)제품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때문에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저작권사별로 라이선스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속은 정부기관에서만 가능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남는 건, ‘단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정확하게 말해 소프트웨어저작권 단속은 정부사법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경찰, 체신청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은 개인, 소프트웨어제작업체나, 저작권관련단체에 신고를 받아 단속활동을 펼치게 되고, SPC(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때 기술지원차원에서 협조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소프트웨어단속을 할 수 없다. 단속에 필요한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관련돼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저작권과 관련된 사기임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단속은 회사 자료를 토대로 진행

소프트웨어단속은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게 된다. 우선 컴퓨터의 대수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맞추게 된다.

각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파악하고, 라이선스계약과 일치하는지 검사하게 된다. 이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직원이 기술지원으로 삭제된 프로그램도 레지스트리 아래단계까지 검사하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삭제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자료실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셰어웨어나 프리웨어들도 약관에 따라서 사용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앱축프로그램인 알집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구입 후 사용해야 한다. 이렇듯 소프트웨어마다 약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용 전에 특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고에 있는 컴퓨터도 단속 대상

사법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보를 받게 되면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동하게 되고, 사내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의 범위는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설치했던 소프트웨어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비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PC의 경우에는 창고에 있는 것이라도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친고죄? 고소를 취하하면 되지 않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에 속한다. 친고죄는 고소, 고발이 있을 때 가능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있고, 그 단속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단속활동을 위해 고소고발을 한 후 소프트웨어 제작업체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 한 개인이라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범인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란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런 이유로 고소 이후 모든 과정을 해당 법률사무소에 위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민사상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민사합의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돼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은 민사상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는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합의금 지불 단계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끝났으나, 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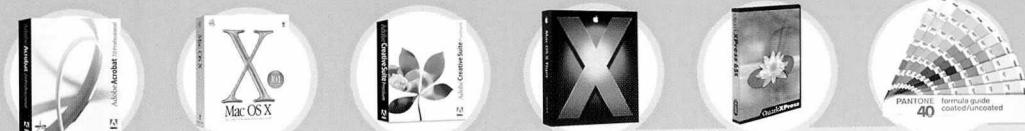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상)

소프트웨어 단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맷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하)

소프트웨어 사용이 줄지 않자, 합의금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보통 합의금은 업체의 의도여부, 고의성여부, 정품사용의지여부 등을 판단해 변호사측에서 제시하게 된다. 몇차례 조정기간을 거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변호사는 형사상으로 문제를 끌고 가게 된다.

형사상으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검사에게 관련 내용이 모두 전달되고, 다음부터는 법원의 출두명령을 받게 된다. 형사상의 문제로 넘어간 다음에는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통 처벌은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벌금형도 역시 형벌의 하나로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장려를 위한 캠페인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보통 피고용자가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사용자, 즉 대표자에게 있다. 회사 또는 그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었는가에 상관없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피고용자가 업무상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음에도 회사에서 재정적인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두고 있어, 대표자인 사장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피고용자들이 관련된 법령상의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드웨어 구입시 무상제공 소프트웨어도 의심 해 봐야

최근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급하던 모 업체가 보급컴

퓨터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급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를 모르고 사용하던 사용자들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입시 무상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한번쯤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원본이라는 다른 증거가 인도되지 않는 한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복제물이라고 판단해도 된다.

자체 점검을 위한 소프트웨어, Click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Click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가격까지 함께 소개해 정품 구입을 돋고 있다. 또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점검, 단속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업체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공생할 수 있는 길 찾아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고, 또한 합의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정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제작업체에서도 이런 업체들을 단속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